

|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제정 통지

■ 회원사에 사용협조 요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을 제정, 본회 소속 회원사에 통보 및 사용권장을 요청해 왔다.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 사항, 사육경비 지연이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고시 등으로 정비되는 대로 향후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본회는 각 회원사에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 발송했으며,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 래 -

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이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기하여야 함(약관법 제19조의2 6항)

나.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약관법 제19조의2 제8항)

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약관법 제19조의2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임(약관법 제19조의2 제9항)

라. 약관법 제19조의2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약관법 제19조의2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회원사간 거래(B2B) 실시

■ 유통비용 절감

최근 소비감소 및 생산량 증가 등 수급불안으로 닦고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회원사별로 과부족 물량이 발생하고 있으나 산지수집상을 통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산지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본회는 회원사별로 과부족 물량이 발생할 경우 외부 유통을 통해 거래하지 않고 협회내에서 회원사별로 과부족 물량에 대한 거래를 추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회원사간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일단 1차적으로 외부 시스템에 준비될 때까지 자체 시범거래를 추진하되, 부족 물량 발생시 세부사항을 기재하여 협회 담당자 매일로 통보하면, 협회에서 과부족 물량에 대한 회원사간 수요를 검토하여 개별 통보 후 거래를 하게 된다.

| 가금류 사육농가 실태조사 결과 알림 |

■ 'AI 재발방지를 위한 강화계획' 추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AI 재발방지를 위한 강화계획' 추진에 따라 가금류 사육농가별 출입통제 시설 등 설치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왔다.

이에 본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회원사에 공문 발송하고, 회원사에는 미설치 농가에 대해 조기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래 -

□ 실태조사 결과

(단위 : 호, %)

출입통제시설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소독조			차단막		
계	설치	미설치									
9,975 (100)	3,571 (36)	6,404 (64)	9,975 (100)	3,510 (35)	6,465 (65)	9,975 (100)	4,286 (43)	5,689 (57)	9,975 (100)	4,064 (41)	5,911 (59)

□ 조치사항

○ 시·도(시·군)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 현지 점검시 차단 방역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 설치 농가에 대한 지도 강화

※ 설치의무 대상 농장에 미 설치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

○ 양계협회, 계육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등은 농가 지원 물품 구입시 방역시설(출입통제 안내판, 발판소독조)을 우선적으로 공급

○ 지자체 및 관련기관은 2012년 1월말까지 발판소독조 등 농가별 방역시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지도·교육 강화

- 검역검사본부는 2월부터 4월까지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지도·점검, 미 설치 농가 적발 및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통보

| 2012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

■ 통권 200호 편집계획 논의



본회는 지난 1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간 닦고기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년도 월간 닦고기 편집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월간 닦고기가 2012년도 2월호로 통권 200호를 맞이함에 따라 특집호 제작에 대해 논의했다.